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사업연도		
------	--	--

1. 내국법인 현황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④대표자 성명	⑤업태종목

2. 외국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 현황

⑥법인명	⑦구분	⑧특정외국법인 여부	⑨납세자번호	⑩소재지	⑪발행주식 총수	⑫지분율(%)

3. 수입배당금액 및 익금불산입 금액 명세

(단위: 원)

⑬외국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명	⑭총수입배당금액	⑮익금불산입 배제금액	⑯익금불산입 대상금액 (⑭-⑮)	⑰익금불산입 비율 (%)	⑱익금불산입액 (⑯×⑰)
계					

4. 외국자회사 지분을 인수한 경우 외국자회사 주식 취득가액 조정 명세

(단위: 원)

⑲외국자회사 법인명	⑳주식 취득가액	주식 취득일 현재 외국자회사 이익잉여금 배당액 중 익금불산입액			㉔외국자회사 주식 조정 취득가액 (㉒-㉓)
		㉑이익잉여금	㉒당기 배당액 중 익금불산입액	㉓익금불산입 누적액	

작성 방법

1. ①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라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적습니다.
2. ⑦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출자로 신설된 외국자회사의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신설)’, 내국법인이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인수)’, 같은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법인’ 을 적습니다.
3. ⑧란에는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를 초과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해당: ‘여’, 미해당: ‘부’)를 적습니다.

※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중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배당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 서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4. ⑨란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상의 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를 적고, 해외 직접투자법인이 아닌 경우 배당금 지급법인의 거주지국 납세자식별번호를 적습니다.
 ※ 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투자 등에 대해 국내 모법인의 관할 세무서가 부여한 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9자리)를 적어야 합니다. 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가 없을 경우 관할 세무서(법인세과)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서(첨부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고유번호 부여 요청을 하면 즉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5. ⑩란에는 외국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이 소재하는 국가 및 도시명을 적습니다.
6. ⑫란에는 외국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⑭란에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총수입배당금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포함)을 적습니다.
8. ⑮란에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총수입배당금액 중 「법인세법」 제18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배당금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를 초과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혼성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등)을 적습니다.
8. ⑰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비율(95%)을 적습니다.
9. ㉑ ~ ㉓란에는 외국자회사 주식 취득일 현재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중 당기에 배당받아 익금불산입한 금액(㉑)과 당기까지 익금불산입한 배당 누적금액(㉓)을 적습니다. 다만, 익금불산입 누적액(㉓)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을 최초로 보유하게 된 날의 직전일 기준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㉑)을 한도로 합니다.
10. ㉔란에는 외국자회사 주식 취득가액(㉑)에서 익금불산입 누적 배당금액(㉓)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